# 임원보수규정

제정	1993.05.06	개정	2003.12.11
개정	1994.03.14	개정	2004.12.09
개정	1994.07.25	개정	2005.12.28
개정	1995.12.13	개정	2006.12.28
개정	1996.03.23	개정	2007.12.27
개정	1997.10.22	개정	2008.02.27
개정	1998.11.27	개정	2009.03.30
개정	2000.09.05	개정	2014.01.24
개정	2001.12.28	개정	2014.06.19
개정	2002.05.08	개정	2018.03.22
개정	2002.12.24	개정	2021.04.30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정 1993.05.06 개정 1994.03.14 개정 1994.07.25 개정 1995.12.13 개정 1996.03.23 개정 1997.10.22 개정 1998.11.27 개정 2000.09.05 개정 2001.12.28 개정 2002.05.08 개정 2002.12.24	개정 1994.03.14 개정 개정 1994.07.25 개정 개정 1995.12.13 개정 개정 1996.03.23 개정 개정 1997.10.22 개정 개정 1998.11.27 개정 개정 2000.09.05 개정 개정 2001.12.28 개정 개정 2002.05.08 개정

[인사노무처 급여복지부 042-600-817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27.2000.09.05>

- 1. 기본급
- 2. 성과급
- 3. 퇴직금

##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3조(기본급) ① 임원의 연간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상임 이사회가 결정한다.<개정 1998.11.27,2000.09.05,2001.12.28,2003.12.11,2004.12.09, 2005.12.28,2006.12.28,2007.12.27,2008.02.27>
  - ② 기본급에는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1.27>
- 제4조(지급시기) ① 기본급의 지급은 연간 기본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98.11.27>
  - ② 성과급의 지급은 사업연도 종료 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일정금액은 당해 년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후 정산한다.<개정 1998.11.27,2000.09.05,2003.12.11>
- **제5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신규 선임시 보수는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8.11.27>

- ② 재직 중 퇴직하였을 때에는 당월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8.11.27,2014.1.24>
- ③ 직원으로 재직 중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각각의 신분에 따라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8.11.27>
- ④ 일할 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제6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11.27>
  - 1.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보상 및 배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비로 지급한다. <개정 1998.11.27>
  -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휴직발령 다음달 분부터 2개월간에 한하여 휴직직전의 자격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한다.<개정 1998.11.27>
  - 3. 제1, 2호 이외의 휴직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7>

# 제 3 장 성과급

- 제7조(성과급)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성과급은 정부에서 정한 지급한도 및 지급률에 따르며, 이사의 경우 산정된 지급률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개정 1998.11.27,2000.09.05,2002.05.08, 2002.12.24,2003.12.11,2004.12.09,2007.12.27,2009.03.30,2014.1.24,2018.3.22>
  - ② (삭 제)<2018.3.22>

#### 제7조의 2(중기성과급) <신설 2018.3.22>

- ①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의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중기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정부에서 정하는 운영방안에 따른다.
- ③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방법) ① 회계연도 중 임원으로 선임시의 성과급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98.11.27>
  - ② (삭 제)<2018.3.22>
  - ③ 회계연도 중 임원 보직 변경시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의 보수 및 지급률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11.27>
  - ④ 임원의 청령의무 위반 시의 성과급 적용은 관련 계약내용에 의한다.<신설 2006.12.28>

#### 제 4 장 퇴직금

- **제9조(퇴직금)** ① 임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재임기간 1년당 1개월의 월평균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8.11.27,2000.09.05,2002.05.08,2014.1.24>
  -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당해 임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신설 2002.05.08,개정 2014.1.24>
  -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신설 2014.1.24, 개정 2021.4.30>
  - ④ 임원이 경영성과 부진,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경영계약서 또는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감사는 이사의 경영계약서를 준용한다.<신설 2000.09.05, 개정 2004.12.09, 2014.06.19>

- ⑤ (삭 제)<2018.3.22>
- ⑥ 회사의 경영상태 등 일시적인 회사 시책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의 감액지급으로 인한 기준임 금의 하락 시에는 감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개정 2014.06.19>

**제9조의 2(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2.05.08, 개정 2014.1.24>

# 제 5 장 보 칙

제10조(회사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1.27>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회사설립 이전에 선임된 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시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 의한 집행은 유보한다.<개정 1995.07.25>
- ③ (유보분 지급) ②항에 의한 유보분을 1995년 7월 부터 소급 지급한다. <개정 1995.07.25>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퇴직위로금 지급 시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임원 재직 기간에 대하여는 '98년 11월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1998년도 성과급은 경영계약서에 의거 개정된 연간 기본급을 적용하여 '99년도에 지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퇴직금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제4조2항의 성과급 지급시기는 2003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9조 2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최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성과급은 2007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3조 제1항의 연간기본급은 2008년 비상임 이사회 결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1항 3호 및 제8조 2항은 2009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1항 1호 및 제8조 2항은 2014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18.3.22>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1.4.30>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 수 표 <삭제 2008.02.27>